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9
----------	-----

제출연월일 : 2000. 2 . 2.

제 출 자 : 김진석의원외3인

1. 개정이유

지방의회 운영제도 개선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1999.8.31일자(법률 제6,002호)로 개정되고, 세부사항인 동법 시행령이 1999.12.31일자(대통령령 제16,672)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법에 부합되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조례명칭상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라.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1호, 제2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 <u>회의수당</u> "이란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u>회의수당</u> 을 말한다. 3-5 (생략)	제2조(감사) ----- ----- 1. (현행과 같음) 2. " <u>회기수당</u> "----- ----- <u>회기수당</u> ----- ----- 3-5(현행과 같음)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생략)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현행과 같음)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도의원 당해연도 <u>회의 수당</u>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도의원 당해연도 <u>회의 수당</u> 의 1년분 상당액에 다음 각목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 ----- 1. ----- ----- ----- <u>회기 수당</u> ----- 2. ----- ----- <u>회기 수당</u> ----- ----- -----
제5조-제12조 (생략)	제5조 - 제12조(현행과 같음)